

SAg1.39.6

[자료백서 (2)] 대외공개가능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2005년 9월 ~ 2006년 3월)

- 4부 - 업무전략기획팀 회의 문서
- 5부 - 인권운동사랑방 요청 자료
- 6부 - 민간초청 워크숍 관련 자료
- 7부 - 인권운동사랑방 내부소통·논의 자료

정리 : 범용



자료백서 (2)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인권운동사랑방

[자료백서 (2)] 대외공개가능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2005년 9월 ~ 2006년 3월)

- 4부 - 업무전략기획팀 회의 문서
- 5부 - 인권운동사랑방 요청 자료
- 6부 - 민간초청 워크숍 관련 자료
- 7부 - 인권운동사랑방 내부소통·논의 자료

정리 : 범용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자료백서 (2) 목록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자료백서 (2) 목록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경과보고

[업무전략기획팀 회의 문서]

<제1차 회의(2005년 9월 13일)>

- 발전기획단 『전략기획팀』 운영계획(안) (국가인권위원회 전략기획팀)
- 업무전략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인권운동사랑방)
- 업무전략기획팀 첫 회의 결과보고

<제2차 회의(2005년 9월 23일)>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2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 + 2002~2005년도 위원회 업무추진계획
 - + 2기 위원회 비전 및 사명에 대한 내부 공모작
- 이창수 초초초안입니다. (새사회연대)
- 호주 인권과 균등기회 위원회 조직 전략계획 (2003년1월 - 2005년12월)
-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전략계획 (2004-2006)
- 업무전략기획팀 두 번째 회의 결과보고

<제3차 회의(2005년 10월 12일)>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3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 + 내부팀 작성 전략계획 초안
 - + 호주 인권과 균등위원회 조직전략계획
 - + 몽골 인권위원회 조직전략계획
 - + 아일랜드 인권위원회 아일랜드 사회의 인권 증진과 보호 업무계획 2003-2006년
 -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분석자료
 - +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제안서(배경내 위원)
 - + 위상강화기획팀 추진 현황 보고(위원회 위상 관련 환경분석/ 제1차 위상강화티 회의/ 위원회 위상에 대한 내부 의견)
 - + 역량강화팀 업무 추진 현황보고 (2005.10.7 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 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배경내 위원)

<제4차 회의(2005년 10월 19일)>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4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 + 내부 팀 및 외부위원 작성 전략계획 초안 내용 비교표
 - + 제2기 인권위원회 비전·사명·목표·전략(안) (김종서 위원)
 -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숙제 (조효제 위원)
 - + 전략계획 초안 (장주영 위원)

- + 2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목표 제안(초안) (배경내 위원)
-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기 비전과 임무, 목표/세부목표 수립에 관한 의견 (이창수 위원)

<제5차 회의(2005년 11월 2일)>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5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 + 팀 초안
 -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2006년-2008년)
 -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안)

<제6차 회의(2005년 12월 7일)>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6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2005.11.14, 05년 제23차 전원위원회 보고안건)
 -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건 (2005.11.15, 05년 제22차 상임위원회 논의안건)
 -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2005.11.28, 05년 제24차 전원위원회 보고안건)
 - +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2005.11.25,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 초안(2006년-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요청 자료]

-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결과 요약보고/ 2005.3.15, 국내협력과
- '업무전략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인트라넷 논란

[민간초청 워크숍 관련 자료]

- 2005.10.4 인사드립니다. [민간초청 워크숍 제안에 대해 외부위원에게 의견을 구한 이메일]
- 2005.10.6,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 초청 워크숍 개최 제안 [인권위 사무총장과 비공식 면담에서 제안한 문서]
- 2005.10.11,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가칭) 제안서 (배경내 위원)
- 2005.10.20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초안) [단장 주재 발전기획단 제4차 회의안건]
- 2005.10.26. 2기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민간초청 워크숍 대응 준비모임 제안서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17차 정기회의 안건]
- 2005.11.2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안) [업무전략기획팀 제5차 회의안건]
- 2005.11.3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대응 인권단체 준비모임

- 2005.11.7 워크숍 프로그램 계획(안) (배경내 위원)
- 2005.11.9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참가 여부 조회
- 2005.11.15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관련 워크숍 불참 여부 건 (새사회연대 이창수)
- 2005.11.16 [필독]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관련 정보/의견 추가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 2005.11.16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보류 통보
- 2005.11.25 [성명]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인권단체 연석회의
- 2005.11.25 <연합뉴스> 인권단체, 인권위에 ‘쓴 소리’
- 2005.11.28 인권위 발전기획 워크숍 무산에 대한 대응 관련 (새사회연대 오영경)

[인권운동사랑방 내부소통 · 논의 자료]

- 2005.9.5 인권위 발전기획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내)
- 2005.9.20 인권위 업무전략기획팀 첫 회의(9.13) 결과 보고 (경내)
- 2005.10.4 [보고] 인권위 발전기획단 외부위원들께 보낸 메일 (경내)
- 2005.10.14 [보고]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업무전략팀 현황 보고 (경내)
- 2005.11.7 [자료]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논의 현황 (경내)
- 2005.11.7 발전기획단 워크숍 관련 의견서 보냈어요 (경내)
- 2005.11.10 [보고] 발전기획단 워크숍 논의 (승은)
- 2005.11.11 [필독자료] 발전기획단 논의관련 (승은)
- 2005.11.11 [참고자료] 발전기획단 논의 관련 2 (승은)
- 2005.11.14 [참고자료] 인권위! 인권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 (새처럼)
+ 국가인권위! 인권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 2005.11.15 [회의자료] 논점정리 -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 어떠해야 하나? (경내)
+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나?/ 경내
- 2005.11.16 [보고] 발전기획단 관련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 (경내)
- 2005.12.1 [보고] 국가인권위 최근 사항 보고(NAP, 발전기획단 관련 24차 전원위 결정) (승은)
- 2005.12.16 발전기획단 해산 결정내렸답니다. (경내)
- 2005.12.23 [논의안건] 발전기획단 활동 평가 (경내)
+ 051226 상임활동가회의, 발전기획단 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 2006.1.23 2기 인권위 업무전략기획안-전원위 상정안건 (경내)
- 2006.1.24 인권위 전원위 방청 기록 (초화)
- 2006.2.24 [보고] 인권위 인권증진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새처럼)
- 2006.3.2 [공지] 국가인권위 비전 선포식 (경내)
- 2006.3.6 [자료&공지] 국가인권위 업무전략기획안 최종본 (경내)
- 2006.3.7 Re: 비전선포식 대응에 대한 제안 (새처럼)
- 2006.3.9 [성명초안] 국가인권위 비전선포식 성명 초안 (경내)
+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경과보고

□ 일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050829 「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계획(안) 확정	
050903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에게 참여 요청	050905 상임회의, 발전기획단 참여 결정
050912 05년 19차 전원위원회	
050913 ☞ 업무전략 제1차 회의	
050915 ♥역량강화 제1차 회의	
050923 ☞ 업무전략 제2차 회의	
050925 ♥역량강화 제2차 회의	
050926 △위상강화 제1차 회의	
051006 △위상강화 제2차 회의	050929 제1차 발전기획단 대응회의 051004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에게 의견 요청 051006 제2차 발전기획단 대응회의 인권위 사무총장 면담 051011 인권위에 민간초청 워크숍 제안
051012 ☞ 업무전략 제3차 회의	
051013 △위상강화 제3차 회의	
051013 ◇ 제3차 단장 주제 발전기획단 회의	
051019 ♥역량강화 제3차 회의	
051020 ☞ 업무전략 제4차 회의	
051020 ◇ 제4차 단장 주제 발전기획단 회의	051020 평화권모임에서 워크숍 참여 제안
051026 △위상강화 제4차 회의	
051026 ♥역량강화 제4차 회의	051026 인권회의에서 워크숍 참여 제안 정보인권활동가모임에서 워크숍 참여 제안
051027 △위상강화 제5차 회의	
051102 ♥역량강화 제5차 회의	051031 워크숍 대응 준비모임 사전회의
051102 ◇ 제5차 단장 주제 발전기획단 회의	
051108 ☞ 업무전략 제5차 회의	
051108 △위상강화 제6차 회의	
051108 ◇ 제6차 단장 주제 발전기획단 회의	051103 워크숍 대응 인권단체 준비모임
051110 ♥역량강화 제6차 회의	
051114 05년 23차 전원위원회	
051115 ◇ 제7차 단장 주제 발전기획단 회의	
051121 05년 22차 상임위원회	
051123 ◇ 제8차 단장 주제 발전기획단 회의	051125 인권회의, 워크숍 무산 항의성명
051128 ♥역량강화 제7차 회의	
051207 05년 24차 전원위원회	
051214 ☞ 업무전략 6차 회의	
051220 ◇ 제1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 발전기획단 해산 결정	051222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사전 평가회의 051226 상임회의, 발전기획단 대응활동평가
051227 ◇ 제2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060104 ◇ 제3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060109 ◇ 제4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060113 ◇ 제5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060117 ◇ 제6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060123 06년 2차 전원위원회	060209 인권위 업무전략안 완성에 대한 대응논의
060213 06년 3차 전원위원회	060213 상임회의, 업무전략안 완성시 대응계획
060313 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	060313 인권회의, 비전선포식 비판 성명 <발전기획단 대응활동 마무리>

□ 인권운동사랑방 대응활동 세부내용

○ 05년 9월 5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회의

- 배경내 활동가가 업무전략기획팀에 참여하고, 범용 활동가가 적극 도와주기로 결정

○ 05년 9월 29일 제1차 발전기획단 대응회의

- 발전기획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도 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 외부전문가들은 인권운동진영을 대표하는 역할이 아니라 매개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

- 하지만 현재 발전기획단 운영 상황을 보았을 때, 인권위 전략에 대한 논의는 발전기획단 내부로만 그치고, 외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할 가능성이 큼. 이에 11월초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외부전문가 및 단체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인권위 전략에 대해 논하는 워크숍 개최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

- 워크숍 제안서(초안)은 경내 활동가가 작성하고 외부전문가들에게 먼저 회람한 후 인권위에 공식 제안하기로 함. 범용 활동가는 외부전문가 회람·의견수렴시 적극 돕기로 함

- 인권위가 워크숍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히 이야기되지 않음. 다만 워크숍 제안이 거부되었음에도 발전기획단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전에 그토록 주장했던 개방적 운영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05년 10월 4일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에게 의견 요청

- 11월초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제안에 대한 의견

○ 05년 10월 6일 제2차 발전기획단 대응회의

- 워크숍 개최 제안에 대해 답변을 확인한 외부위원은 송원찬, 이재명, 이대훈, 한상희 이상 4명. 따라서 외부위원 전체 명의로 인권위에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함

- 인권운동사랑방 차원에서 제안을 하되,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전기획단에서 빠지기로 잠정 결정함. 그전에 발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기로 함

○ 05년 10월 6일 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11월초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

○ 06년 2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회의

- 13일 전원위에 업무전략기획 최종안 올라옴. 우리 제안이 많이 반영되었음

- 역량강화와 위상강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월 16일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선포식이 미루어짐

- 최종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하기로 함: 제안된 워크숍이 무산되고 논의가 폐쇄적인 특위체제로 간 것에 대해 비판하고 전략 확정 이후 모니터와 민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기조로 집필 예정

- 인권교육과 사회권 부분 관련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권운동사랑방 및 인권회의에도 요청함

기획단 전략기획팀 회의자료

**발전기획단
『전략기획팀』 운영계획(안)**

2005. 9. 13.[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전 략 기 획 팀**

발전기획단 전략기획팀 운영계획

1. 전략기획팀 구성현황

- 위원회 내부(3명)
 - 팀장 : 박찬운 정책국장
 - 팀원 :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 정책총괄과 임 송(간사)
- 외부 전문가 (5명)
 - 김종서 배재대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변호사 장주영,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 발전기획단 설립 배경

-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위한 조직발전 계기 마련 필요
 - 제1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위원회 발전 방안을 모색
- 위원회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
 - 개헌 논의,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국가 인권기구라는 위원회 위상에 대한 위협 (예: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정부의 주장, 사법부의 인권위 권고에 대한 처분성 인정, 장애 차별위원회의 독자설치 요구,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인권위 권한 및 기능강화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의 지속적 반대 등) 등 외부환경의 변화

-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에 따른 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위상, 현재 조직혁신팀이 마련 중인 조직 개편안과 연계하여 위원회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 금년 말에 정부에 통보될 예정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응하는 위원회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필요성 등

※ 현재 조직혁신팀이 마련 중인 중·장기 조직 개편안이 인권위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에 해당한다면, 발전기획단이 검토할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해당

- 이러한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위상, 업무, 역량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발전기획단」을 설립
 - 위원회 발전기획단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소수의 위원회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을 설치 (업무전략기획팀, 위상발전 기획팀, 역량발전 기획팀)

3. 업무 전략기획팀 주요 임무

- 제2기 인권위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구체화하고, 향후 3년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3개년 업무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
- 업무 전략계획은 '파리원칙'의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다음 4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위원회 미션, 전략목표,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 4개 분야 : 인권정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협력

※ 업무전략계획 체계도



4. 역할 분담

가. 외부 전문가의 역할

- 외부 전문가는 위원회가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 자문기능은, 전략기획팀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회 내부 팀원들이나 다른 전문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의견 제시, 전략계획 작성과 관련한 아이디어나 자료의 제공,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전문가가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실시 할 경우, 위원회는 연구결과에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

나. 연구 분과

- 외부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다음 4개의 연구 분과 중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 활동한다.
 - 4개 분과 : 인권정책 연구 분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연구 분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연구 분과, 인권 교육 및 협력 연구 분과
- 각 연구 분과는 관련 분야에서의 위원회 사명, 전략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법 등을 검토한다.

※ 참고 : Strategic Planning Model (Bryson, 1995)

- 1단계: Strategic Planning 추진에 대한 동의
- 2단계: 조직 임무의 파악
- 3단계: 조직 Stakeholder의 파악, 그들의 필요와 관심 파악
- 4단계: 조직의 사명과 핵심가치의 명료화
- 5단계: 조직 외부환경의 평가 (기회/위협 요소)
- 6단계: 조직 내부환경의 평가 (장점/단점)
- 7단계: 조직이 당면한 전략이슈 파악
- 8단계: 이슈관리를 위한 전략구성
- 9단계: 전략계획의 검토 및 채택
- 10단계: 효과적인 Action Plan 수립
- 11단계: 지속적인 전략계획의 평가 및 보완절차 확립

5. 팀 회의

- 팀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총 6~7회) 개최하고, 팀장이 소집
- 팀 전원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 연구 분야별 팀 회의 개최 가능
- 팀 구성원간 업무연락은 전자메일 등을 적극 활용

6. 행정 사항

□ 전략기획팀 첫 모임 : 9. 13. 오후 5시

- 전략기획팀 임무 설명, 역할분담, 시간계획 등 향후 팀 활동계획 논의
- 회의 (1시간 정도) 후 만찬
- ※ 준비사항 : 전략기획팀 세부운영 계획, 수집된 기초자료 (위원회 업무계획, 주요국가 Strategic Plan 등) 및 전문가에게 수여할 위촉장

업무전략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 발전기획단 구성 의의

- 인권위는 “2기 위원회 본격가동을 위한 조직발전 계기 필요, 개헌 논의 대비, 차별시정 전담기능의 내실화 필요, 무소속·독립·통합형·권고형 인권기관이라는 위원회 위상에 대한 위협요인에의 대처 등 위원회 내·외부의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위원회 위상, 업무, 역량 등 내·외부 조직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위원회 발전 및 활동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발전기획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인권운동사랑방(아래 사랑방)은 이와 같은 구성 취지에 적극 찬성하면서, 발전기획단의 의의를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함. 발전기획단은 ‘인권위의 방향성과 업무, 전략’을 놓고 인권위와 인권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최초의 시도임. 지금까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 NAP추진기획단, 각종 TF팀 등 사안별 대응을 위해서만 인권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을 결합시켜 왔음. 특히 인권위의 방향성과 업무, 전략에 대한 논의는 인권위 내부로 철저히 제한해 왔고, 전원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할 때에도 대부분 비공개해 왔음. 이번 발전기획단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방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발전기획단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임.

- 2기 인권위는 출범하면서부터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단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례를 만들겠다고 공표해 왔음. 물론 2기에 들어 사업집행 이전에 인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1기에 비해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가 대부분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구체적 모델이 확립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발전기획단은 그러한 전범을 만들 수 있는 첫 시도로 판단됨.

□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그 동안 인권위는 인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결합시켜 협력단위를 구성할 때 개별 인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참여 요청을 해 왔음.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소속이 없는 개인 전문가들에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임.

- 단체 활동가들은 소속단체 내부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합의, 협력 속에서, 그 단체를 대표하여 특정 영역이나 주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 외부에서 연대나 참여 요청이 왔을 때, 그 역할을 어느 활동가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지는 해당 단체의 고유 권한임. 따라서 인권위가 단체 활동가를 특정하여 단위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단체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임.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이미 여러 차례 인권위에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이번 기획단 구성 과정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했음.

- 이 때문에 사랑방 내부적으로 발전기획단 참여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음. 하지만, 이번 발전기획단 활동이 향후 인권위를 바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참여하기로 결정함. 향후에는 개별 단체 활동가를 지목하여 사안별 단위를 구성하는 방식은 철저히 지양하고, 그 단체에 결함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인권위는 이에 따라 모임 이전에 이미 이메일로 인권위에게 문제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기록 차원에서 이번 첫 모임에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바임.

□ 외부참여형 단위 운영 선례에 대한 반성 필요

- 사랑방은 앞서, 이번 발전기획단 활동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단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범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음. 하지만 이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전 경험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향후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또 다시 전례를 답습하게 될 것임.

- 먼저 지금까지 외부참여형 단위 운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 NAP추진기획단,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등 TF팀 등은 인권위가 구성한 외부참여형 단위의 대표적인 사례임.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그 운영과 논의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임. 따라서 단위에 참여한 인사들은 팀 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할지 몰라도, 그 논의를 외부로 확산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위의 문제 의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지 못해 왔음. 또한 감시의 눈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속에 안주하도록 하였고,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 단위가 해소 되더라도 어느 누가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음.

- 더더욱 큰 문제는 인권위가 그 단위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켰다는 것을 명분으로 논의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 왔다는 것임. 그 결과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의 폭넓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단위에 참여한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단체들 사이를 갈라놓고 인권진영을 분열시키는 악역을 자초해 왔음. 이에 사랑방은 이번 발전기획단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로 참여시켰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발전기획단에 참여하지 못한 인권단체들의 관심까지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의견과 역량을 수렴하기 위한 기획을 벌어나갈 것을 제안함.

□ 외부참여형 단위 운영에 대한 과감한 혁신

- 외부참여형 단위는 구성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히 개방적이어야 함. 단위에 참여하는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함. 그러므로 먼저 발전기획단의 문제의식 및 구성·운영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발전기획단에 참여를 제안받지 못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에게 발전기획단의 존재를 알려야 함. 아울러 발전기획단의 모든 논의안건과 회의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발전기획단이 민감한 과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사형성 과정에 있는 논의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인권위의 발전과 새로운 위상 확립은 인권위의 힘만으로, 그리고 이번 발전기획단에 참여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임. 따라서 인권위의 발전을 고민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좀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인권위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함.

- 인권위 내·외부의 비판 세력에게는 전술적으로 논의과정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 문제는 언젠가 공개되어 논리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 문제이고, 비판세력이 발전기획단의 논의과정을 미리 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오히려 비판세력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논의과정을 비공개함으로써 광범한 지지 세력의 형성을 가로막는 것이 인권위에게는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될 기획단이지만, 반드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발전기획단 내부 논의는 가장한 짧고 굵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시기적으로는 1달 보름 정도 발전기획단 내부 논의를 통해 초별토론을 마무리하고, 보름 정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마지막 1달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만드는 수순이 될 거라 생각함. 외부 의견 수렴절차가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의견서 요청 등 사전·사후에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제안

- 발전기획단은 크게 업무전략기획팀, 위상발전기획팀, 역량발전기획팀으로 나뉘어 있음. 그리고 각 기획팀은 고유한 과제를 갖고 있음. 그런데 이들 세 팀의 고민은 서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며, 유기적으로 맞물려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 과제는 현재 단장의 통할 아래 팀장과 간사의 고민에 맡겨져 있음. 업무전략을 고민할 때 위상발전팀과 역량발전팀의 고민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이는 위상발전이나 역량발전을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비록 자신이 속한 팀의 고유한 고민은 아니더라도, 매번 팀 회의 때 다른 팀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보고받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각 팀별 초별논의가 마무리된 후 최종권고안이 완성되기 전에, 발전기획단 전체모임을 갖고 팀별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시키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임.

- 또한 2기 인권위의 업무전략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2기 인권위 출범시 내걸었던 3대 운영 방향(사회권·취약계층에 대한 강조, 정책권고·예방기능 강화,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조직혁신팀 고민의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음. 특히 조직혁신팀은 9월말에 조직개편(안)을 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조직혁신팀의 문제의식을 모른다는 것은 고민의 중복을 통해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쏟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조직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바, 조직혁신팀의 문제의식이 신속히 공유될 필요가 있음.

업무전략기획팀 첫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9. 13.(화) 오후 5시~6시 (회의후 만찬)
- 참석자 : 장주영 변호사, 이창수 대표, 배경내 활동가, 박찬운 정책국장,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 임 송 사무관
- 회의안건
 - 발전기획단 구성취지, 업무전략 기획팀 임무 등 설명
 - 팀 작업방식 등 협의
 - 자료집 제공

2. 회의 진행방식

- 박찬운 팀장이 발전기획단 설립취지, 업무전략 기획팀 임무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3. 주요 논의사항

가. 팀 활동방식 관련

- 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외부 위원들이 그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장주영 위원)
- 2가지 방식이 있을 것임. 위원회가 초안을 내서 팀 회의에서 검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들이 초안을 내서 검토하는 방식도 가능함.(이창수 위원)
- 위원회는 어떤 방식이든 팀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대안으로 내부팀원들이 다음 모임 때까지 초안을 만

들되, 외부 위원들께서도 각자 전문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해 오셔서 논의를 거쳐 최종 초안을 만들고 그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박찬운 팀장)

※ 이 방식에 대한 참석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

나. 발전기획단 구성 관련

- 팀 활동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 위원회가 이 시점에서 발전기획단을 설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예를 들면, “1기 지도부 활동의 오류를 수정하고 위원회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2기 지도부가 자신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수단으로 기획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 기획단 설립 목적이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이창수 위원)
- 위원회가 내·외부 조직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위원회 발전방향 및 활동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발전기획단을 구성한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구성과정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이 있음.(배경내)
 - 그 동안 인권위는 인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결합시켜 협력단위를 구성할 때 개별 인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참여 요청 해 왔음.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소속이 없는 개인 전문가들에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임. 이는 단체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서 향후에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함.

- 위원회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기 활동에 대한 자가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기타 발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대외 공표, 회의결과 공개, 작성된 기획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 절차, 다른 2개 팀 회의내용 공유 등 건의

다. 기타 사항

- 위원회가 제시한 전략기획팀 운영계획(안) 중 업무전략계획 체계도 상 "Mission", "Strategic goal" 등 체계나 용어사용이 적정한지 의문 (이창수 위원) 등

4. 향후 조치계획

- 차기회의 시까지 계획안 초안 작성
- 불참 외부위원(김중서, 조효제 교수)에게 회의결과 및 차기 회의 (9. 23., 16:00) 일정 통보
- 차기회의 후 위원장과 만찬(비서실과 협의완료)
- 업무전략 체계도상의 용어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기타 행정업무
 - 외부위원에게 수여할 위촉장 준비 등

회의자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2차 회의

2005. 9. 23. (금)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1. 회의 일시 : 2005. 9. 23. 16:30 ~ 18:30

2. 회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

3. 참석 대상

○ 팀 장 : 박찬운 정책국장

○ 외부위원(5명) : 김종서, 조효제, 장주영, 이창수, 배경내 위원

○ 내부팀원(4명) : 심상돈 과장, 사무관 이수연, 강명숙, 임송(간사)

4. 회의 안건

○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 및 업무전략기획팀 임무 소개

○ 위원회의 연간업무계획 체계 및 내용(2002~2005)

○ 외부위원 제안 사항

○ 기타 논의사항(차기 회의 일정 및 안건 등)

※ 회의 후 위원장 주최 만찬(18:30, 동해수산)

안건1 : 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 체계 및 내용

1. 위원회 업무계획(붙임 자료 참조)

- 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2002~2005)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비전의 제시가 없거나 명확치 않음
 - “인권·민주국가실현을 위한 기반조성(2002)”, “인권보호·신장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2003)”,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비전·위상 확립(2004)”,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를 위한 현장·예방중심 인권보호 활동(2005)” 등이 위원회 정책방향의 최상부에 위치하나, 이를 위원회의 비전으로 보기 어려움
 - 호주의 경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호주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

Our Vision

An Australian society in which the human rights of all are respected, protected and promoted.

- 둘째, 미션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음
 - 2002, 2003, 2004, 2005년도 공히, 「정책목표-추진전략-세부실행계획」 체계로 위원회의 미션부분이 누락
 - 호주의 경우, 미션은 크게 “인권에 관한 리더십의 제공”과 “효과적인 조직”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Our Mission

To provide leadership on human rights by:

- Building partnership with others
- Having a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 Being responsive to the community, and
- Promoting community ownership of human rights

As an effective organization we are committed to

- Unity of purpose
- Valuing our diversity and creativity, and
- The pursuit of excellence.

- 셋째, 업무계획의 체계와 용어에 일관성이 없음
 - 2003년도의 경우, 「비전-정책목표-추진전략」, 2004년도는 「추진목표-추진전략」, 2005년도는 「추진전략-중점사업」, 「비전-정책기조」로 일관성이 없음
- 넷째,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혼재되어 있음
 - 예를 들면, 2005년도의 경우, Goal과 세부사업에는 “현장중심의 조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추진전략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등

※ 참고 : 주요 국가의 전략계획 체계

- 많은 국가의 국가인권기구가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가지고 있으나, 전략계획의 명칭과 체계는 상이함
- 호주의 국가인권위원회 "Corporate Plan(Jan. 2003~Dec. 2005)"은,
 - Vision/Mission/Main Functions/Commitment/Corporate Strategies
 - Corporate Objective 1~6

- UNDP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몽고의 "Strategic Plan(2004~2006)"은,
 - Vision/Mission/Goals
 - Goal One/Objective 1.1/Activity 1.1.1 ...

- 아일랜드의 "A Plan for 2003-2006"은,
 - Introduction/Mission Statement/Values(Core Values, Operational Values)/A Strategic Approach: Criteria for selecting key areas of work/Key Areas of Work(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Functions and Activities(Keeping law and practice under review, Reviewing legislative proposals on request ...)

※ 비전과 미션에 대한 설명

Vision answers the question "What do we want the organization to be?"

Vision is added as the element that enables staff to describe the ideal future for the organization and themselves.

Mission answers the question "Why do we exist?."

Core values respond to "How do we want to act?"

2. 논의 사항

- 전략계획 포함범위 및 체계에 관한 사항
- 요구되는 작업(예: 환경분석 등)과 시간계획에 관한 사항
- 작업방식 및 외부 위원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안건2 : 외부위원 제안 사항

안건3 : 기타 논의 사항(차기 회의 일정 및 안건 등)

- 붙임 : 1. 2002~2005년도 위원회 업무계획 체계 및 내용
2. 위원회 비전 공모전 출품작

Vision : 인권·민주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Mission :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보호, 취약집단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무 수행

인권정책

Goal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1. 인권관련법령에 대한 협의·개선 및 권고 강화
2.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시
3. 인권침해·차별행위의 판단기준 및 구제지침 개발
4.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점검 및 개선권고
5. 버림받은 아이,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특별기획사업)

세부사업

- 1-1. 인권관련법령 제·개정시 협의의 실효성 확보
- 1-2. 인권관련 기존 법령·정책·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 2-1.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
- 2-2. 다수인보호시설(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 2-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 3-1. 각종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및 구제지침 작성
- 3-2. 주요 차별유형 구체화 및 구제지침 개발
- 4-1. 주요 인권조약에 대한 UN최종 평가서에 따른 국내 법 제도 점검
- 4-2.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방안 수립 촉구
- 4-3.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 5-1. 실태조사 실시
- 5-2. 인권보호개선방안 개발 및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추진전략

1. 신속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업무수행 역량 강화
2. 기획조사 등을 통한 인권침해 구제의 효과성 제고
3. 진정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은행 기반구축

세부사업

- 1-1. 진정처리 시스템 구축
- 1-2. 현장중심의 진정접수 및 조사체계 확립
- 2-1.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 2-2.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고발사안 등의 지속적 점검
- 3-1. 법률구조기관, 관련시민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연결
- 3-2. 진정인 관점의 상담기법 개발 및 활용
- 4-1. 잠재적 인권침해 및 차별사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 4-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결과의 분석·정리
- 4-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은행 구축 및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인권정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조체제 구축

추진전략

1. 수사기관 및 군대·공무원·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 각급 교육기관·연수기관 인권교육과정 현황 파악
3.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실시

A.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B. 인권관련 국제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

- 1-1. 순회 인권교육 추진
- 1-2.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 1-3. 인권교육 강사 은행 구성 및 활용
- 2-1. 초·중고 교과서 내용분석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2-2. 각급 교육기관의 인권강좌 실태 파악
- 3-1.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3-2. 인권문화제 개최 및 언론사 공동캠페인 전개
- A-1. 인권정책,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수렴 제도화
- A-2. 시민·인권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 B-1. 인권기구 가입 (APF)
- B-2.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가
- B-3. 선진국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Vision : 인권보호·신장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

Mission : 인권옹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국내외 인권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인권정책

Goal

인권옹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 추진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3. 인권관련 법령 종합조사 단계적 실시
4. 주요 인권현안 적극대응
5.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시
6. 인권침해·차별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침 제정

세부사업

- 1-1. 국가기관 간 협의체계 제도화
- 1-2. 금년 중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NAP시안 확정
- 2-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외국사례 조사
- 2-2. 관련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3-1. 국내 인권관련 법령 (형사관계, 사회권, 차별분야 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추진
- 3-2. 유럽인권법원의 형사관련 판례 조사·분석
- 4-1. 주요 인권이슈(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Task Force Team 구성·운영
- 5-1. 실태조사 과제선정 기준마련(실태조사 미실시 분야,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 국가단위 장기 조사과제)를 우선 실시
- 6-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유형분류 및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 6-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원인분석과 예방지침(안)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활동 강화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 및 전문성 제고

추진전략

1.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적극적 구제
2. 5대 차별행위 진정사건 조사·시정
3. 채용 상 차별관행 사전 예방
 - A. 화상 인권상담시스템 구축
 - B. 지방순회 인권상담 활동전개

세부사업

- 1-1. 검찰·경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적극적 구제
- 1-2. 구금시설내 열악한 수용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 1-3.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제 도출 및 유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 1-4.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상황실태조사 연차 실시 추진
- 1-4. 취약분야(장애인, 부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권조사 적극 실시
- 2-1. 5대 차별분야(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시정
- 3-1. 사후적 시장·구제로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채용과정상의 차별행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직권조사 추진
 - A-1.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인터넷 상담 및 화상 진정접수시스템 구축 추진
 - B-1. 5개 지방도시 순회 인권상담 추진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추진전략

1. 인권교육발전 종합프로젝트 추진
2.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
 - A. 인권시민단체 활동사업 지원
 - B.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등 개발
- 가.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
- 나. UN 등 국제인권기구·단체 주관 국제회의 참가 활성화

세부사업

- 1-1.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1-2. 영역별 인권교육 현황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3. 인권전문 교수요원 양성
- 2-1. 인권사진집, 인권애니메이션, 인권포스터, 뉴스레터 등 제작·배포, 인권논문 공모사업, “대 언론 인권 안내서” 발간 추진 등
- 2-2.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 인권문화제 개최
 - A-1.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인권시민단체 지원 사업 및 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A-2.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실천 가능한 대중성 있는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왕따” 문제 해결 등)
- 가-1. APF 회원국가와의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 협력강화
- 가-2. 남아공, 스칸디나비아 인권기구 및 유럽인권재판소 방문 추진

Vision :

Mission :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비전·위상 확립

인권정책

Goal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추진전략

- 1.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 수행
- 2.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 친화적 법·제도 실현

세부사업

-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마련
- 1-2.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1-3. 북한인권 관련 사업추진(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 탈북자 인권실태조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 1-4. 인권상황 실태조사 체계화(NAP 계획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국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등)
- 1-5. 2003년 3개 TFT(국가보안법/비정규직/사회보호법) 권고안 마련 및 신규 TFT 추진(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 1-6. 기타 인권침해·차별행위 판단기준 및 예방지침 수립,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 발간, 인권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 확립 등
- 2-1. 인권법령정보시스템 구축(주요 개선대상 법령 선별, 개선 추진)
- 2-2. 법령 개선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 2-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사항 모니터링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활동

추진전략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효율적 상담·조사구제 활동 강화

세부사업

- 1. 지방사무소 설치 추진(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우선 설치)
- 2.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장기 미결사건 집중처리, 중간회신 철저 등)
- 3. 사건처리 내실화(업무 표준화, 인권침해 유형별 판단 기준 정립, 인권취약 및 사각지대의 인권침해 예방활동,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방안 등 검토)
- 4. 차별관행 조사역량 강화(차별관행에 대한 지속적 조사, 원인·결과 분석 및 조치, 차별행위 주제별 전문가 초빙 교육 등)
- 5. 면전진정 및 인권상담 지침서 발간 추진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아태지역 인권선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추진전략

- 1.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 2. 국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 3. 국제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세부사업

- 1-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확정(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6개 권역별 공청회 개최, 5개년 계획 영문판 발행 및 국제 홍보)
- 1-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초·중·고 인권교육 과정안 개발, 인권교육 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 1-3. 인권교육 교재 개발, 차별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영상콘텐츠, 인권 포스터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월간 “인권” 발행 등) 등
- 2-1.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협력사업 지원,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실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강좌 운영)
- 2-2.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4개 권역별) 및 업무설명회(연 2회) 개최
- 3-1.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 개최 준비(9.13~16)
- 3-2. 국제회의 적극 참가(유엔인권위원회 등)
- 3-3.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APF 활동지원 등)
- 3-4. 제네바 주재 연관관 설치 추진

인권정책

Goal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추진전략

-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 2. 사회권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인권현안 적극 대응
- 3.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세부사업

- 1-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최재천 의원안 등 5개의 의원입법 개정안 및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개정안)
-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작성 및 권고
- 2-1.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인권현안에 대하여 적극적 정책대안 마련(주요 분야에 대한 단계적 권고안 마련, 사회권 관련 전담조직 구성 등)
- 2-2. 사회권 관련 인권상황실태조사 확대
- 2-3.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NAP과 연계하여 추진)
- 2-4. 법령제도의 정비(국제조약 가입 및 이행 강화를 통한 법제도의 국제적 수준 향상 도모)
- 3-1. 군대내 인권개선, 북한인권 연구, 사형제도,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정보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한센인 인권개선 등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및 시스템 구축
현장 및 지역 인권활동 강화

추진전략

- 1. 인권취약분야 상담·조사·구제활동 강화
- 2.

세부사업

- 1-1. 능동적인 인권현안 발굴·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권조사 활성화(언론매체 모니터링 강화, 차별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지침 제정, 직권조사팀 상설화 등)
- 1-2. 인권취약시설 인권침해 구제 강화(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군대 등)
- 1-3.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 1-4. 위원회 권고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이행 확인 점검
- 2-1. 현장중심의 조사활동(인용가능 사건의 경우 원칙적 현장조사 실시)
- 2-2. 인권순회 상담실시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적극적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차별시정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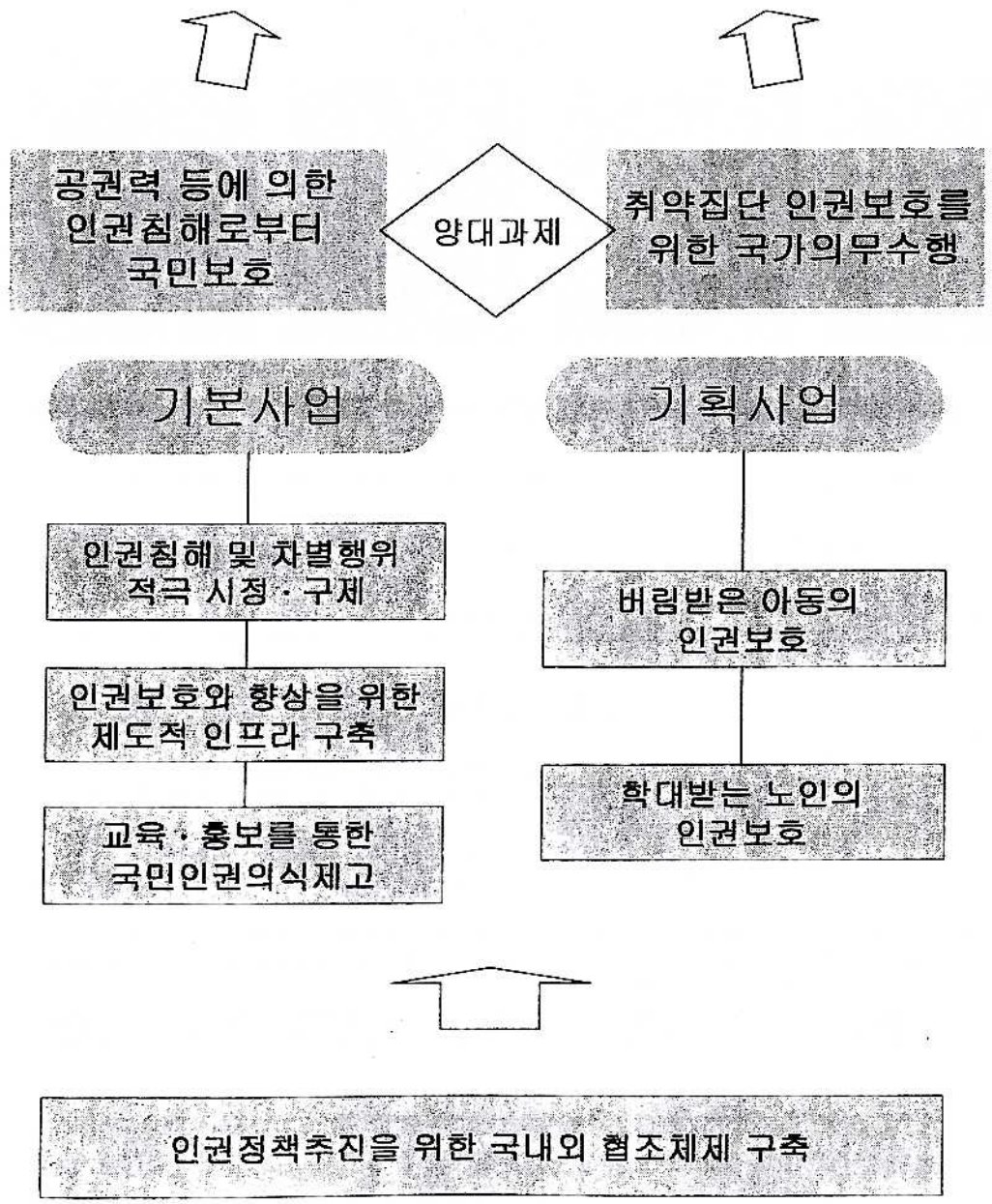
- 1.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 2. 선진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 및 교류협력 강화
- 3.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시스템 체계화

세부사업

- 1-1.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실시 등)
- 1-2. 단체활동가 대상 인권교육 강좌 실시(인권단체와 공동 추진)
- 1-3. 인권단체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부문별 정책간담회,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상시적 협력체널 운영)
- 1-4. 인권취약현장 방문
- 2-1. APF, ICC에서의 위원회 위상강화 및 지도적 역할 수행
- 2-2. UN, NGO 주최 국제회의의 참가 다양화
- 2-3.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국가인권기구 설립 지원,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사업 등)
- 2-4.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및 홍보(국제인권법 관심제고 및 이행관련 사업 강화, 국제인권법 관련 세미나 개최 등)
- 3-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통합학급 교원에 대한 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3-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 추진 및 대상 확대
- 3-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사이버 인권교육 추진, 인권교육 법제화 방안 등)
- 3-4. 인권문화 콘텐츠(인권영화, 만화, 사진집, 사이버 문화마당 등) 개발
- 3-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사례집 발간

II. 2002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인권·민주국가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Ⅲ. 2003年度 業務推進 方向

비전 인권보호·신장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



정책 목표	인권옹호 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증진	인권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국내외 인권 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	---------------------------------	--------------------------	----------------------	---------------------------------

추진 전략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2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활동 강화
	4	국민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6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및 국제활동 활성화

§ 2004년도 업무 추진 계획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비전·위상 확립

- »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활동
- » 아태지역 인권선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추진목표

추진전략

- » 인권정책 업무의 체계적 수행
-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 법제도 실현
- »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효율적 상담·조사·구제활동 강화
- » 국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 » 국제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2005년도 업무계획

I. 기본방향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를 위한
현장·예방 중심 인권보호 활동

추진 전략

-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및 시스템 구축
- ◇ 국가인권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 현장 및 지역 인권활동 강화
- ◇ 적극적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차별시정

중점 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권리구제기능 강화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권고
3. 사회권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인권현안 적극 대응
4.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5. 인권취약분야 상담·조사·구제 활동 강화
6.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7. 선진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 및 교류협력 강화
8.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시스템 체계화

IV. 제2기 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기조

비 전

-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호민관
- ◇ 대국민서비스와 조직혁신에서 모범적인 국가기관
- ◇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인권기구

정 책 기 조

- ◇ 사회권 보호 증진 활동에 역량 집중
- ◇ 예방적·정책적 기획조사 활동 활성화
- ◇ 국내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 ◇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 ◇ 국제 교류협력 강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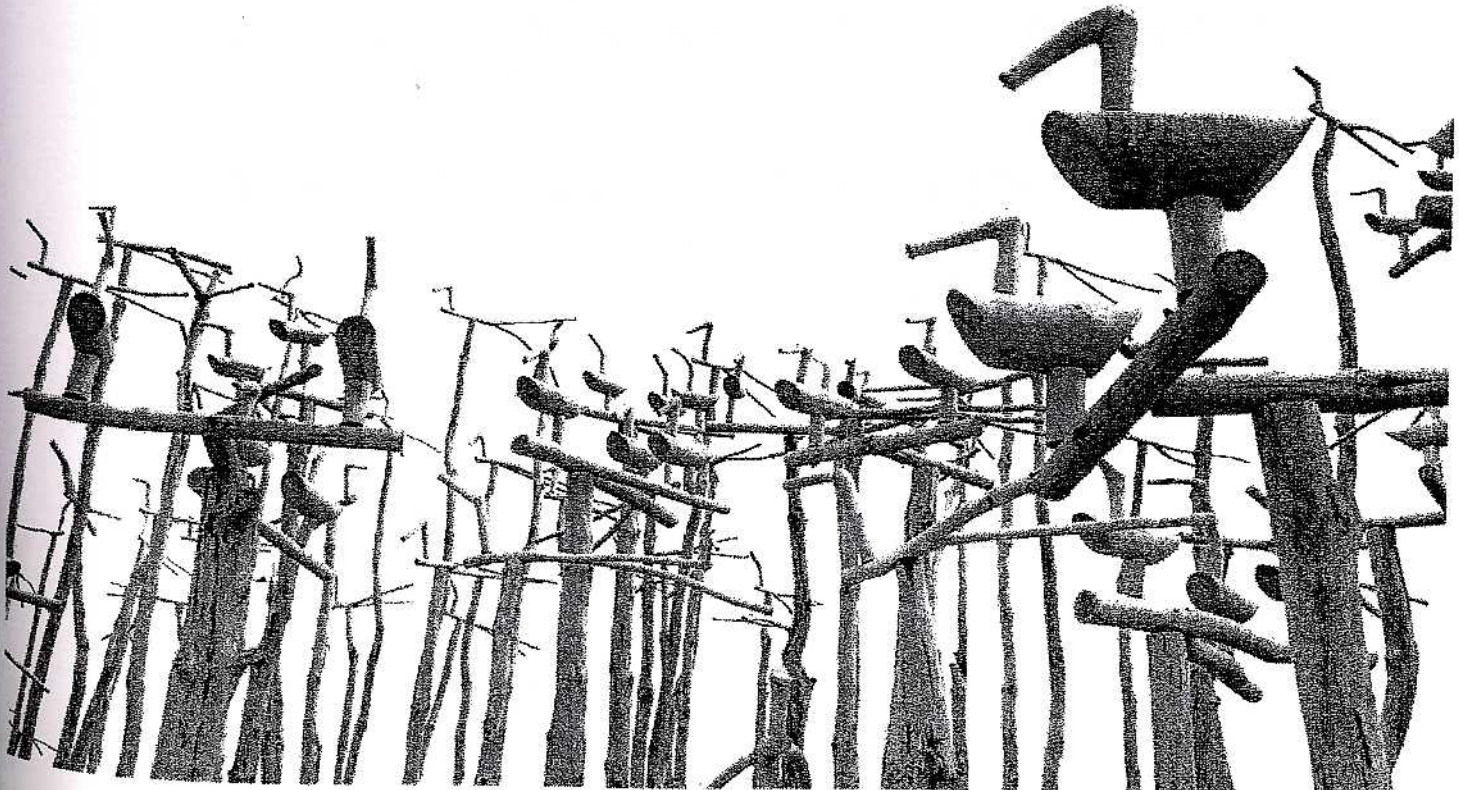
일터를 들이서면서
오늘 하루를 멋진 날로 만들겠다고
선택해 주십시오
당신의 동료들, 고객들, 팀원들
크리고 당신 자신 또한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일터에는 모두가 기쁨을 누리시길



어떤 일을 하는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직업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스스로 일하기에 좋은 일터라고 느껴지는 곳은 내부의 직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외부 고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조직혁신팀

우리 위원회의 비전...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하나

비전

-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의 권리와 책임이 사회적 가치로 창출되는 국가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를 숭고하게 여긴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와 성숙한 인권의 발로가 곧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션

-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며, 존엄성에 대한 보호 노력을 경주한다.

- 인권이 공존의 근간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 한다.

⇒ 다양한 인격체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개개의 인격체들에 대한 인격을 보호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

⇒ 인격에 대한 보호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둘

□ 비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국제적 수준의 인권의 가치를 서로 깨닫고, 법치를 존중함으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향상되는 평화적 통일 민주국가를 지향한다.

□ 미션

1.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연관성 등 인권의 가치와 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로부터 연유한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더 나아가 연대권 등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 관행에서 완전하고도 확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2.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되, 특별히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지만 힘이 없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친구가 되고, 능동적으로 이들의 취약한 권리의 구제를 위해 사회적 기득권, 고정관념 등과 싸우는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3. 국민에 대하여 가깝고, 투명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국가인권기구가 되도록 노력한다.
4. 인권이 법치와 민주적 질서에 의해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하고, 법과 제도와 관행이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5. 시민사회, 정부, 국회 등에 대하여 인권보장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구함에 있어 위신을 내세우거나 형식을 강조하기 보단 주저함이 없이 겸손하게 실질을 추구한다.
6. 인권의 신장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적인 남북통일 국가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 해설

1. 인권의 보편성 등 그 위상과 특성을 아는데 있어, 자신 뿐 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타인에 대하여도 함께 이해하는 상호적 가치를 포함하고, 그 수준을 국제적 규정과 원칙에 까지 이르도록 하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백히 국제기구임을 표명하고,
2. 과거 유엔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발전시킨 인권의 제 권리들이 자본주의(자유), 사회주의(평등), 제3세계(발전) 등 각 국가의 이념과 이기적 행위에 의해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지배하거나 약화시켰던 왜곡과정을 직시하고 이를 청산하고자 자유권에서 연대권까지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각 중요성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3. 이러한 인권이 일회적 주관성과 기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객관성과 엄밀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아울러, 법이 인권보장이라는 본래에 목적에 합치되도록 인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와 관행에 이르기까지 개선되도록 한다.
4. 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어떤 사회적 영역에서든 차별과 침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서 기 위해서 부단히 고정관념과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정신을 가져야 하며,
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에 대하여 접근성, 친밀성, 투명성,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책임성을 가지는 한편, 권력기관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6.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정부, 국회 등에 대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함에 있어 관료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임해야 하며,
7.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존중받은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

당신과 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 사랑,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 사랑,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사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나눔 · 배려 · 평화, 인권의 모습입니다.

넷

□ VISION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제1기 위원회 구호 그대로 유지 하면서)

「인권의 현장에서 함께 숨쉬는 위원회」 추가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MISSION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

< 위원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역할과 기능 >

1. 우리 국민 모두가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신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알고, 둘째, 인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셋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2.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기본권과 국제인권장전에서 서술한 인권과 인권보호조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올바르게 준수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와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을 수행함
3. 국가공권력 뿐만 아니라 법인과 사인 간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차별행위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활동에 대한 협력과 지원 보강 (단, 직접적인 구제와 보호는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위원회법에 의하여 긴급구제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음)

□ 해 설

○ 우선 인권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원회차원에서라도 용어사용의 통일이 필요함

※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권'담론 구체적인 정의

'인권'은 자신을 대변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경제적, 사회 · 문화적, 정치적 기본 권리(국제인권장전 및 헌법상 기본권)를 말하며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들 취약계층의 인권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 국가, 세계의 인류공동체의 인권 향상에 기초가 되기 때문임

※ 취약계층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기회의 박탈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 · 문화적, 정치적으로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둡고, 축고, 외롭고, 상처받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사람과 집단

○ 현장성의 강조이유

- 인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인권보호와 차별시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법이론 보다는 실천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활동가들로부터 배워서 체득하는 것이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실행가치

다원성(다름의 존중과 참여의 보장, 개방성과 수용성, 대내외 협력)

투명성(객관성) : 정확하고 실질적인 통계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

공정성(평등성) 기회의 형평성

독립성(독립적 활동의 보장과 역설적으로 겸손함을 겸비하여야 함)

책임성(신뢰성) : 지속적인 자기 반성과 평가 (자기 성찰)

전문성(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의 우수성)

접근성(신속한 대응능력) 실천력을 강화하는 현장성

효율성(자원의 인력의 효과적인 분배)

다섯

○ 비전

-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고, 그 책임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 미션

- 밖으로 드러나는 차별은 물론, 보이지 않는 차별의 위협도 저항의 대상이 된다.
- 인권의 개념은 진화한다. 진화하고 발전하는 인권의식을 찾아내고 이를 삶에 적용한다.
-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국가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내가 먼저 노력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

여섯

1. 위원회 비전

-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 한다
- 사람이 보다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계최고의 인권옹호 전문기관
- 다수 국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최고의 국가기관

2. 위원회 미션

- 국민의 인권을 5년 내에 세계최고 수준으로 향상
-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인권옹호기관으로 도약
- 다수 국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권정책 지속적 개발
- 인권침해 · 차별예방을 위한 정책, 교육, 홍보, 조사 활성화
- 국민들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인권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수행 시스템 지속 혁신
 -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강구
 - 예산집행과 조직운명을 국민 만족과 감동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
 -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열린 위원회 운영
 - IT기술을 활용 보다 편리한 진정접수 및 처리방안 지속강구
- 2년 내 투명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도약